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82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이상식・이건태・조인철

최민희 · 정춘생 · 서미화

김문수 • 부승찬 • 이언주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용량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

폭 개선 및 간소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 원회를 둠(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 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 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각종 인· 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와 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바.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와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그 밖에 정보 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 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송·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
 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

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 · 변전설비

-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 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따른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사항
 - 4.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중재 및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6.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이행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또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 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 ⑥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발사업의 수립 및 실시 등

- 제8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 3.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서류

- 6.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 수도 설치의 인가
-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 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19.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 2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21.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3.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 인

- 24.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 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 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3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3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3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 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개발사업 인허가 등 특례

- 제1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지선정 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 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

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 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 제14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한다.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 제15조(규제 개선의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전력망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

- 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원 · 보상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요청한 경우에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 매수범위 및 매수청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구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 참여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 1.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지원
 - 2. 제17조에 따른 특별한 지원
 - 3. 제18조에 따른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 4.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21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 여도 효력이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2.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제25조(과태료) 제8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 중인 사업이 이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